

ORIGIN CASE

Vol. 8



- Case 1 드로잉 태블릿
- Case 2 와이퍼 블레이드 (제8512.90호)
- Case 3 캐뉼라에 삽입된 봉합사
- Case 4 TFT-LCD 모듈
- Case 5 고압 세척기
- Case 6 리튬이온 배터리 팩
- Case 7 망치
- Case 8 정수기 필터 (제8421.21호)
- Case 9 집적 회로
- Case 10 소형 드론 세트



한국원산지정보원

CONTENTS

Case 1.	드로잉 태블릿	1
Case 2.	와이퍼 블레이드 (제8512.90호)	6
Case 3.	캐뉼라에 삽입된 봉합사	12
Case 4.	TFT-LCD 모듈	17
Case 5.	고압 세척기	21
Case 6.	리튬이온 배터리 팩	25
Case 7.	망치	29
Case 8.	정수기 필터 (제8421.21호)	33
Case 9.	집적 회로	38
Case 10.	소형 드론 세트	42



case

1

드로잉 태블릿

요약

사례명	드로잉 태블릿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1606 (2021.06.16.)
사실관계	전면·후면 커버 모듈, 전자기 공명 보드, blank PCB, 스타일러스 펜 등의 중국산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한 뒤, SMT 공정을 통한 3가지 PCBA(키패드 보드, 스케일러 보드, 센서 제어 보드) 제조, 일본 및 대만산 펌웨어 설치, 최종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드로잉 태블릿 완성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CBP는 SMT 공정을 이용해 다양한 기판에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만에서 생산된 세 개의 개별 PCBA(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의 원산지는 대만이라고 판정함대만산 PCBA와 중국산 부품 및 구성 요소는 각 부품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장치에 본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결과적으로 대만에서 수행되는 여러 공정(PCBA 제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각 부품 조립 등)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작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¹⁾

사례명 [드로잉 태블릿]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1606 (2021.06.16.)

사실관계

요청자 Wacom Technology Corporation (대리인: Damon V. Pike, Esq.)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com Cintiq 16 with Pro Pen 2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디스플레이 모듈 전면·후면 커버 모듈 4가지 종류의 PC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 공명 보드 (EMRB, Electro-Magnetic Resonance Board) 키패드 보드 (Keypad Board) 스케일러 보드 (Scaler Board) 센서 제어 보드 (SCB, Sensor Control Board)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스타일러스 펜 등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 드로잉 및 이미지 작업을 수행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자동 자료 처리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

제품	부품	기능
기능	EM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센서 코일이 부착된 단순한 PCB 보드로서 LCD 화면 뒤에 부착되어 센서 코일이 자기장을 통해 각 펜 스트로크를 캡처할 수 있도록 설계됨
	키패드 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블릿 내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며, 기본적으로 전원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담당
	스케일러 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화면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출력 장치로 4개의 PCBA 중 가장 많은 수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S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RB에 부착된 센서 코일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펜의 위치, 압력, 속도를 인식하고, 이를 해석하여 디지털화된 입력 신호로 변환한 후 스케일러 보드로 전송 SCB가 존재하지 않으면, EMR 보드는 센서로 기능하지 못함
	스타일러스 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화면 위에 이미지를 그리는 장치
	LCD 디스플레이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화면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하는 출력 장치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산 전면·후면 커버 모듈, EMRB, 스타일러스 펜, 펜 홀더,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blank PCB를 대만으로 수입
2. 대만 제조 공정
 - SMT 공정을 통해 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 제조
 - 일본산 WTC 태블릿 펌웨어 및 대만산 스케일러 보드 펌웨어를 SCB 및 스케일러 보드에 설치
 - 스케일러 보드 및 키패드 보드를 프린트 커버 모듈에 부착
 - SCB를 프린트 커버 모듈 내 LCD 패널에 부착
 - 백커버 모듈과 프린트 커버 모듈을 나사를 이용해 결합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이 외에도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이후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같은 요소들도 고려될 수 있음
- CBP는 PCBA와 관련하여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 실장 기술)를 이용해 기판에 다양한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반 기판(blank PCB) 및 해당 부품들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C.S.D 19 Cust. Bull. 844 (1985)*

- CBP는 본 사안과 동일한 제품인 Cintiq 16의 원산지에 대해 사전판정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으나, 본 사안과는 제조 공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714 (2020.01.23.)*

- 사례** 대부분의 제조 공정은 본 사례와 비슷하나 네 개의 PCBA 중 EMRB, 키패드 보드, 스케일러 보드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대만에서는 SCB 제조 및 각 부품들의 부착, 고정, 테이핑, 접착 등의 작업만 이루어짐
- 판정** 중국에서 제조되어 대만으로 수입된 세 개의 PCBA 및 개별 서브 어셈블리들은 Cintiq 16에 사용되기 위해 전용 제작된 것으로, 대만에서의 조립 작업을 통해 물리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인 것으로 판정

- CBP는 여러 개의 PCBA를 포함한 장치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해당 장치에 포함된 PCBA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장치에 본질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이 무엇인지, 완성품 내에서 각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을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544 (2020.01.15.)*

- 사례** 대만산 주요 PCBA 2개와 중국산 보조 PCBA 2개를 포함한 여러 부품을 중국에서 가공하여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생산
- 판정** 대만산 주요 PCBA가 완제품의 본질을 부여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이 이러한 주요 PCBA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을 원산지로 판정

- 다만, 어떤 부품이 더 중요한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국가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의 성격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수행된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참고 판정: *BP Ruling HQ H015324 (2008.04.23.)*

- 사례** 중국 또는 대만산 LCD 모니터 2개, 특별한 빔스플리터 미러 및 맞춤형 스텐드로 구성된 입체 (스테레오스코피) 디스플레이로서, 이들 모니터 중 하나는 미국으로 수입된 후 광학 변환 (optical transformation) 공정 및 조립, 정렬, 시험을 거치고 미국에서 조립을 통해 최종 제품이 생산됨
- 판정** 미국에서 수행된 편광(polarization) 공정이 LCD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체 시스템에 입체 디스플레이 기능을 부여하며, 디스플레이의 조립, 시험, 정렬에는 숙련된 기술자의 상당한 시간과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므로 광범위한 가공 작업이 수행된 미국을 원산지로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결과

- ▣ CBP는 SMT 공정을 이용해 다양한 기판에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 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만에서 생산된 세 개의 개별 PCBA(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의 원산지는 대만이라고 판정함
- ▣ 신청인은 대만에서 생산된 3개의 PCBA가 Cintiq 16 드로잉 태블릿에 본질적인 기능을 부여하며, 특히 SCB는 태블릿 내부에서 압력 감지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 부품으로, 단순히 스타일러스를 이용해 LCD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반 태블릿(Apple iPad, Microsoft Surface)과 Cintiq 16을 구분 짓는 요소라고 주장
 - 또한 대만산 PCBA들이 중국산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보다 훨씬 정교하며, 포함된 개별 부품 수 역시 훨씬 많다고 주장함
- ▣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CBP는 대만산 PCBA와 중국산 부품 및 구성 요소는 각 부품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장치에 본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
- ▣ 결과적으로 대만에서 수행되는 여러 공정(PCBA 제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각 부품 조립 등)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작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 시사점

- 여러 개의 PCBA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장치에 포함된 여러 PCBA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어떤 부품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606>
- CBP Ruling NY N308714 (2020.01.23), <https://rulings.cbp.gov/ruling/N308714>
- CBP Ruling NY N308544 (2020.01.15), <https://rulings.cbp.gov/ruling/N308544>
- CBP Ruling HQ H015324 (2008.04.23), <https://rulings.cbp.gov/ruling/H01532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case

2

와이퍼 블레이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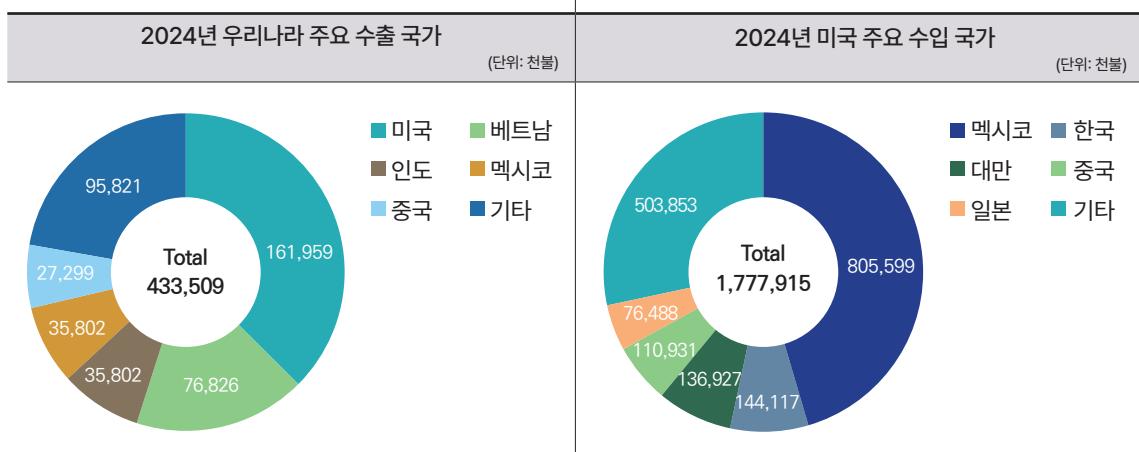
사례명	와이퍼 블레이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4566 (2021.06.17.)
사실관계	멕시코에서 중국산 강철 코일을 절단, 절곡, 편침하여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flat blade vertebra)를 제조하고 중국, 코소보 등에서 수입된 부품들과 최종 조립하여 와이퍼 블레이드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산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절단, 절곡 공정 등을 통해 특정 제품 사양을 충족하도록 제조되며, 완성된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의 정밀한 굽힘은 와이퍼 성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이므로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됨이후 행해진 조립 공정은 크게 복잡하진 않으나, 전반적인 조립 공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멕시코에서 수행된 가공은 수입된 원자재들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제301조 무역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512.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or 2.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8512.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와이퍼 블레이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4566 (2021.06.17.)

사실관계

요청자 Robert Bosch LLC

제품	제품명	• FB3 와이퍼 블레이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철 코일, 후크 커넥터, 홀딩 스프링, 플라스틱 커버 (중국산) • 고무 와이퍼 블레이드 엘리먼트 (유럽산) • 기본 어댑터, 스포일러, 엔드 캡 (코소보산)
	용도	• 차량 앞 유리의 물, 이물질, 먼지를 제거하는 용도
	원재료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철 코일 : 7217.90.50 • 고무 와이퍼 블레이드 엘리먼트 : 4016.99.60 • 기본 어댑터, 스포일러, 엔드 캡 : 8512.90.90 • 후크 커넥터, 홀딩 스프링, 플라스틱 커버 : 8512.90.90
	완제품 HTSUS	• 8512.90.90

제조공정



여러 국가산 재료
멕시코로 수입



멕시코에서 중국산
강철 코일 가공



최종 조립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중국, 코소보 등의 국가에서 멕시코로 부품 수입
2. 중국산 강철 코일을 절단, 절곡, 편침하여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 제조
3. 중국, 코소보 등에서 수입된 부품들과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4.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단순히 길이나 폭을 자르는 작업과 달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나 패턴으로 절단하거나 절곡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구성한다고 판단해 옴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055684 (1979.08.14.)*

수입된 강철 튜브를 길이에 맞게 자르고 세척하고 절곡하여 구성 부품의 형상 및 구조로 가공한 경우 또는 강철 튜브를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평탄화한 후 구멍을 뚫는 가공을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정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555811 (1992.03.20.)*

알루미늄 평판에 대해 다이 컷, 프레스, 특정 모양으로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그림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555265 (1989.07.03.) 및 HQ 557159 (1994.01.11.)*

알루미늄 스트립에 크라우닝, 절단, 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베네치아 블라인드를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 반면, CBP는 주로 조립으로 이루어진 공정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290528 (2018.02.21.)*

사례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케이싱, 코어, 장착 브래킷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케이싱과 코어에 천공하고 장착용 블레이드를 압출-기계 가공-굽힘-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코어를 케이싱에 삽입하고 장착 블레이드를 패널에 고정하여 알루미늄 패널을 생산함

판정 미국 내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처리에 불과하여 케이싱과 코어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수입 전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가공이 훨씬 더 복잡하고 본질적이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 중국산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절단, 절곡 공정 등을 통해 특정 제품 사양을 충족하도록 제조되며, 완성된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의 정밀한 굽힘은 와이퍼 성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됨
- ▣ 이후 행해진 조립 공정은 크게 복잡하진 않으나, 전반적인 조립 공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멕시코에서 수행된 가공은 수입된 원자재들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③ 시사점

- 특정 사양 및 기능이 최종 제품의 본질을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사양 및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원산지판정에 중요 판단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4566 (2021.06.17.), <https://rulings.cbp.gov/ruling/H314566>
- CBP Ruling HQ 555811 (1992.03.20), <https://rulings.cbp.gov/ruling/555811>
- CBP Ruling HQ 555265 (1989.07.03), <https://rulings.cbp.gov/ruling/555265>
- CBP Ruling HQ 557159 (1994.01.11), <https://rulings.cbp.gov/ruling/557159>
- CBP Ruling HQ H290528 (2018.02.21), <https://rulings.cbp.gov/ruling/H290528>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캐눌라에 삽입된 봉합사

요약

사례명	캐눌라에 삽입된 봉합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8838 (2021.07.29.)
사실관계	한국에서 제작 및 절단한 봉합사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에서 봉합사를 미국산 캐눌라 내부에 삽입하고 투명 플라스틱 슬리브(clear plastic slip-on piece) 및 필팩(peel pack) 포장 후 멸균 처리하여 최종 제품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내에서 수행된 공정은 수입된 봉합사의 명칭, 성질,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고 봉합사가 해당 의료기기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므로 원산지는 한국임<ul style="list-style-type: none">(명칭) 봉합사라는 명칭은 캐눌라에 삽입되고 멸균 처리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됨(성질) 완성된 의료기기의 본질은 봉합사에 의해 부여되고 캐눌라는 단지 봉합사를 피부 속에 삽입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시술 이후 캐눌라는 제거되고 봉합사만이 피부 아래 남아 조직을 리프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봉합사는 미국 내 가공 이후에도 형태와 재질 구성이 유지되므로 성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용도) 봉합사는 수입 시점에 이미 피부를 봉합하거나 고정하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캐눌라에 삽입된 이후에도 미용적 시술에 사용되어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였고, 멸균 공정 또한 봉합사의 성질이나 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²⁾

사례명 [캐뉼라에 삽입된 봉합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8838 (2021.07.29.)

사실관계

요청자 Regen Suppliers

제품	제품명	• 캐뉼라에 삽입된 봉합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디옥사논(PDO)으로 된 흡수성 봉합사(suture) • 의료용 등급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속이 빈 캐뉼라(cannula)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조직의 근접 봉합에 사용 • 캐뉼라를 사용해 봉합사가 피하에 삽입되며, 삽입 후 캐뉼라는 제거되고 봉합사는 남아 연조직을 리프팅하는 역할을 담당

제조공정



01
한국에서 봉합사
생산 및 미국 수출



02
미국에서 봉합사를
캐뉼라 내부에 삽입



03
멸균 및 포장

상세공정

1. 한국에서 제조 및 절단된 봉합사를 미국으로 수출
2. 미국에서 캐뉼라 생산
3. 봉합사를 캐뉼라 내부에 삽입
4. 캐뉼라와 봉합사를 투명 플라스틱 슬리브에 포장 후 필팩으로 감싸 멸균 처리
5. 공인된 의료 전문인에게 개별 포장 단위 또는 대량 포장 형태로 판매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관련 법령 및 분석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정: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해 사례별(case-by-case)로 판정을 내리며,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m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성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구성품의 성질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하며, 구성 부품의 형태(form)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성질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 성질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완성품의 본질(essence)을 검토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2016)*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at 225*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착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용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입된 제품의 용도가 가공 후 생산된 최종 제품의 용도와 호환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되어야 하며,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2016)*

판정 결과

-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은 수입된 봉합사의 명칭, 성질,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고 봉합사가 해당 의료기기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므로 원산지는 한국임
 - (명칭) 봉합사라는 명칭은 캐뉼라에 삽입되고 멀균 처리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됨
 - (성질) 완성된 의료기기의 본질은 봉합사에 의해 부여되고 캐뉼라는 단지 봉합사를 피부 속에 삽입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시술 이후 캐뉼라는 제거되고 봉합사만이 피부 아래 남아 조직을 리프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봉합사는 미국 내 가공 이후에도 형태와 재질 구성이 유지되므로 성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용도) 봉합사는 수입 시점에 이미 피부를 봉합하거나 고정하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캐뉼라에 삽입된 이후에도 미용적 시술에 사용되어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였고, 멀균 공정 또한 봉합사의 성질이나 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캐뉼라에 삽입된 봉합사의 원산지는 한국임

② 시사점

- 특정 공정 수행 후에도 부품의 형태나 사전에 결정된 용도가 유지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며, 어느 요소가 제품의 본질을 부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8838 (2021.07.29.), <https://rulings.cbp.gov/ruling/N320557>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TFT-LCD 모듈

요약

사례명	TFT-LCD 모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557 (2021.08.04.)
사실관계	일본에서 TFT-LCD 셀 시트를 제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셀 시트를 개별 셀로 절단하고 부품들에 부착하는 등 최종 조립하여 TFT-LCD 모듈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TFT-LCD 셀은 절단 시점과 관계없이 완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행된 복잡한 제조 공정은 해당 셀이 디스플레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최종 용도를 미리 결정함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셀을 최종 제품과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³⁾

사례명 [TFT-LCD 모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557 (2021.08.04.)

사실관계

요청자 JDI Display America, Inc. (대리인: Toshiba Logistics America, Inc.)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T-LCD 모듈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T-LCD 셀 • 편광판 • 백라이트 • 구동 및 제어용 인쇄회로기판 • 연결용 플렉시블 PCBA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비자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일본에서 TFT-LCD 셀 시트 제조
 - 화학기상증착법(CVD)을 통해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형성
 - 컬러 매트릭스를 유리 기판 위에 제작하여 컬러 필터 제조
 - 컬러 필터와 TFT 사이에 액정 층을 주입한 후 접합하여 TFT-LCD 셀 시트 제조
2. 중국으로 TFT-LCD 셀 시트 수출
3. 중국 제조 공정
 - 셀 시트를 개별 셀로 절단
 - 절단된 셀을 제어 회로가 포함된 PCBA에 부착
 - 편광판, 백라이트, 연결용 플렉시블 PCBA 부착
4. 완성된 최종 제품 포장 후 미국 수출

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또한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TFT-LCD 셀은 절단 시점과 관계없이 완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행된 복잡한 제조 공정은 해당 셀이 디스플레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최종 용도를 미리 결정함

▣ 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셀을 최종 제품과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인 TFT-LCD 모듈의 원산지는 일본임

II 시사점

- 제품에 핵심 기능을 부여하는 단일 구성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 요소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으며, 단순 조립이나 절단 등의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0557 (2021.08.04.), <https://rulings.cbp.gov/ruling/N32055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고압 세척기

요약

사례명	고압 세척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1429 (2021.09.23.)
사실관계	중국에서 펌프 어셈블리, 로터 코어, 스테이터 코어, 모터 코어 등을 제작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부품들에 대한 추가 조립 및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고압 세척기 생산 (사용된 자재의 81%는 중국산이며, 나머지 19%는 베트남산임)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완성된 고압 세척기의 본질은 압력을 이용해 강력한 워터 제트를 분사함으로써 세척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모터와 펌프의 능력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모터와 펌프의 본질은 각각 중국산 펌프, 스테이터 및 로터 코어, 모터 코어에 의해 제공됨베트남에서의 작업(압입, 나사 조립, 절단, 도색 등)은 대부분 단순 작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정을 통해 펌프, 스테이터, 로터 및 모터 코어의 본질이 변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들이 모두 중국산에 해당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부품들의 목적과 기능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⁴⁾

사례명 [고압 세척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1429 (2021.09.23.)

사실관계

요청자 Central Purchasing, LLC

제품	제품명	• 휴대용 전기식 고압 세척기 (모델 번호: 56877)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부품: 펌프 어셈블리, 스테이터 코어, 로터 코어, 모터 코어, 세제 탱크, 내장 호스 릴, 고압 호스, 분사 건 등 베트남산 부품: 손잡이, 프레임, 하우징, 포장재 등 사용된 자재의 81%는 중국산이며, 나머지 19%는 베트남산임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터를 이용해 펌프를 구동하여 호스와 노즐을 통해 물을 강하게 분사하여 다양한 표면을 청소

제조공정



01 중국산 부품 베트남으로 수입



02 베트남에서 최종 조립



03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펌프 어셈블리, 스테이터 코어, 로터 코어, 모터 코어 등 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으로 수입
2. 베트남 제조공정

제조공정	내용
스테이터 조립	제국산 스테이터 코어에 절연지 삽입, 권선, 테이핑, 도색, 튜브 및 전선 절단, 단자 설치 등의 공정 수행
로터 조립	중국산 로터 코어에 샤프트, 플레이트 및 정류자 압입, 절연지 삽입, 권선 및 용접 등의 공정 수행
제조공정	베트남에서 추가 공정을 통해 제조된 스테이터와 로터를 중국산 모터 코어와 결합하여 최종 모터 어셈블리 생산
최종 고압세척기 조립	모터 어셈블리, 펌프 어셈블리, 세제 탱크, 내장 호스 릴, 고압 호스, 분사 건 등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3. 미국 수출

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돼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또한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 완성된 고압 세척기의 본질은 압력을 이용해 강력한 워터 제트를 분사함으로써 세척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모터와 펌프의 능력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모터와 펌프의 본질은 각각 중국산 펌프, 스테이터 및 로터 코어, 모터 코어에 의해 제공됨
- ▣ 베트남에서의 작업(압입, 나사 조립, 절단, 도색 등)은 대부분 단순 작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정을 통해 펌프, 스테이터, 로터 및 모터 코어의 본질이 변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들이 모두 중국산에 해당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부품들의 목적과 기능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인 고압 세척기의 원산지는 중국임

② 시사점

- 특정 부품이 완성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핵심 부품의 생산국이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될 수 있음

③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1429 (2021.09.23.), <https://rulings.cbp.gov/ruling/N321429>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리튬이온 배터리 팩

요약

사례명	리튬이온 배터리 팩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9847 (2023.01.10.)
사실관계	배터리 셀(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제조)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한 후, 가압, 경화, 표면 처리, 결합 등의 공정을 거쳐 배터리 팩 제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최종 제품인 배터리 팩의 본질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수입된 배터리 셀에 의해 부여되는 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핵심 구성 요소인 배터리 셀의 기능 및 용도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배터리 셀의 제조국이 원산지로 판정됨</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⁵⁾

사례명 [리튬이온 배터리 팩]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9847 (2023.01.10)

사실관계

요청자 Hexagon Purus Systems USA LLC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튬이온 배터리 팩 (부품 번호: 40007000) 배터리 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구성 요소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 배터리 셀 - 상·하부 하우징 - 셀 헀더 및 전류 집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판 - 배터리 관리 보드
- 상부 커버 - 저전압 배선 - 고전압 버스바 - 장착 브래킷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전기 배터리 시스템에서 사용 	

제조공정



여러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캐나다에서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팩 조립



미국 수출

상세공정

- 배터리 셀(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제조)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 캐나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제조
 - 리튬이온 배터리 셀 헀더와 전류 집전체에 배치
 - 접착제를 배터리 셀에 도포한 후, 셀을 정렬, 가압, 경화
 - 서미스터(thermistor)를 추가한 후 분진·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정
 - 냉각판에 고정시킨 후, 와이어 본딩 전 거친 표면 형성을 위해 레이저 어블레이션 장비에 통과
 - 배터리 관리 보드, 상·하부 하우징 설치
 - 각 배터리 모듈에 포팅 재료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후 여러 테스트 수행

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3. 캐나다에서 배터리 팩 제조
 - 배터리 모듈을 금속 프레임에 배치, 전기 하네스를 이용해 배선
 - 냉각 매니폴드 추가, 고전압 버스바 설치
 - 상부 모듈(고전압 커넥터, 퓨즈, 배터리 관리 보드로 구성됨) 설치
 - 상부 커버와 장착 브래킷을 볼트로 고정
4. 완성품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이루어짐(circumstances)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또한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자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자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관련 법령 및 분석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배터리 셀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함께 배치하여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경우, 배터리 셀에 대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3045 (2004.08.09.)* 및 *CBP Ruling HQ 734393 (1992.03.20.)*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인 배터리 팩의 본질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수입된 배터리 셀에 의해 부여되는 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핵심 구성 요소인 배터리 셀의 기능 및 용도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배터리 셀의 제조국이 원산지로 판정됨

결론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배터리 셀이 제조된 국가인 중국, 일본 또는 한국임

II 시사점

- 배터리 셀을 단순히 배터리 팩, 모듈 등으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9847 (2023.01.10.), <https://rulings.cbp.gov/ruling/N329847>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Ruling HQ 563045 (2004.08.09.), <https://rulings.cbp.gov/ruling/563045>
- CBP Ruling HQ 734393 (1992.03.20.), <https://rulings.cbp.gov/ruling/73439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요약

사례명	망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3361 (2023.06.21.)
사실관계	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만든 망치 헤드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헤드를 다듬고 플라스틱 캡 및 목재 손잡이와 최종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생산한 망치 헤드가 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며, 중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의 형태, 크기 및 모양을 유지하고 있음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마무리 및 보강 공정에 해당하여 베트남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는 베트남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⁶⁾

사례명 [망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3361 (2023.06.21.)

사실관계

요청자 Shanghai Thor Industrial Co., Ltd.

제품명

- Husky 12-ounce 2-Sided Soft Face Mallet
- Husky 24-ounce 2-Sided Soft Face Mallet

제품

- 탄소강 헤드
- 목재 손잡이
- 플라스틱 캡

제조공정



01

베트남에서 헤드 제조 및
중국으로 수출



02

중국에서 최종 조립



03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베트남 제조 공정

- 탄소강을 금형에 넣어 망치 헤드 형태로 압착
- 헤드에 손잡이 장착용 구멍 천공

2. 망치 헤드를 중국으로 수출

3. 중국 제조 공정

- 헤드에 디버링, 챔퍼링, 연마 작업 수행
- 부식 방지를 위해 헤드에 코팅 작업 수행
- 사출 성형으로 플라스틱 캡 제조 및 헤드 부분에 영구적으로 접착
- 완성된 헤드에 제품 정보 인쇄
- 헤드와 목재 손잡이 결합

4. 완제품 포장 후 미국 수출

6)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생산한 망치 헤드가 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며, 중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의 형태, 크기 및 모양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마무리 및 보강 공정에 해당하여 베트남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는 베트남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인 망치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II 시사점

- 공구 등의 실질적 변형 판정과 관련하여, 최종 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주요 작업 부위가 타국에서 이미 최종 제품의 형태로 제작되고, 이를 수입하여 연마, 코팅, 기타 부분품 조립 등의 단순한 작업만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③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3361 (2023.06.21.), <https://rulings.cbp.gov/ruling/N33336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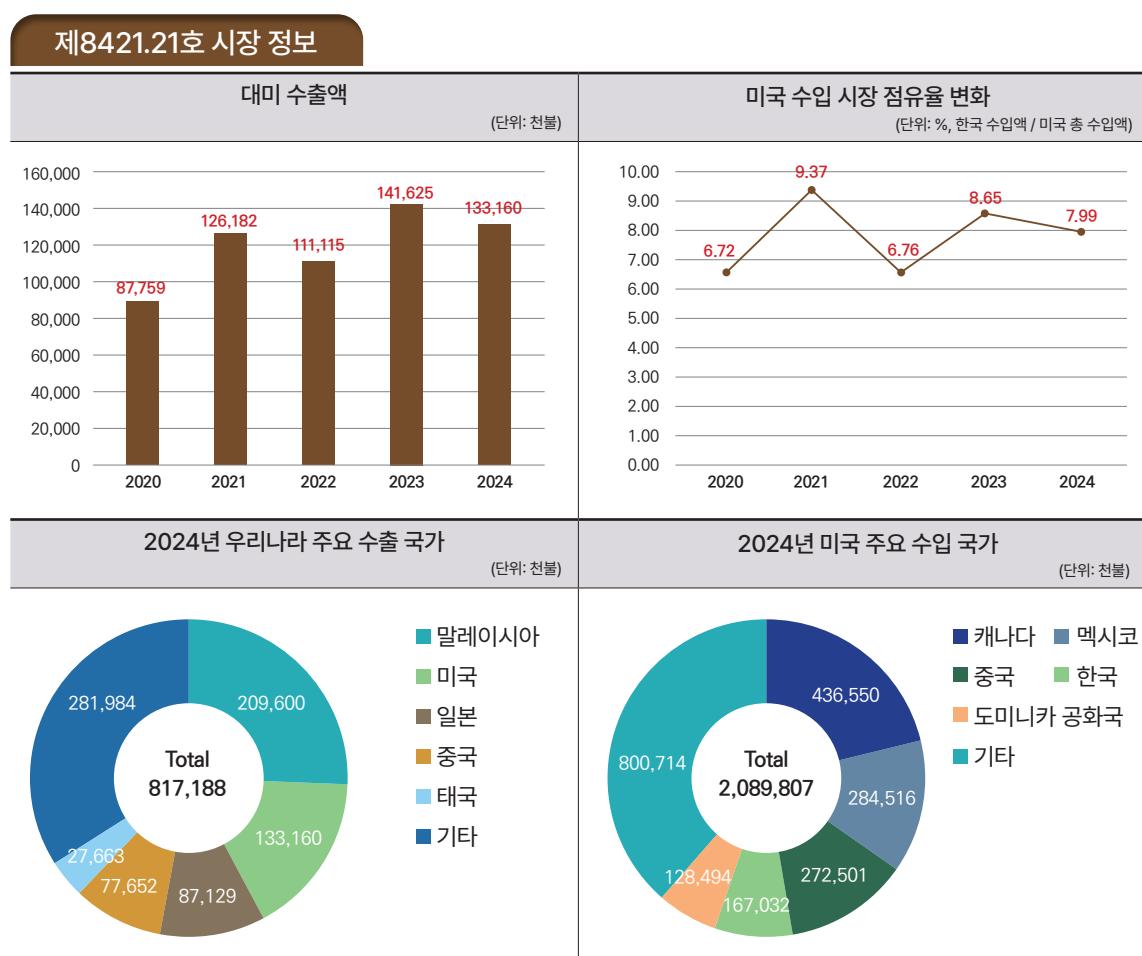
정수기 필터

요약

사례명	정수기 필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5575 (2023.10.27.)
사실관계	한국에서 탄소 블록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한국산 탄소 블록과 중국산 부품들을 최종 조립하여 정수기 필터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탄소 블록 생산에는 높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 이를 위한 맞춤형 장비가 필요하며, 해당 부품은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최종 제품의 핵심 기능인 물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 구성 요소로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탄소 블록의 원산지인 한국임</p> <p>-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주로 접착, 용접, 압착으로 이루어져 복잡하지 않고 개별 부품들에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21.21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정수기 필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5575 (2023.10.27.)

사실관계

요청자 Qingdao Ecopure Filter Co., Ltd. (대리인: Calfee, Harter & Griswold LLP)

제품명	교체용 냉장고 정수기 필터 (모델 번호: EFF-6011, EFF-6020)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링 (중국산) • 상부·중간·하부 커버 (중국산) • 섬프 (중국산) • 투명 보호 필름 (중국산) • 탄소 블록 (한국산)
용도	• 무연 필터를 통해 염소, 오염물질, 냄새를 줄여 물의 맛을 개선
완제품 HTSUS	• 8421.21.0000

제조공정



01

한국에서 생산된
탄소 블록을 중국으로 수출



02

중국에서 중국산 부품들과
최종 조립



03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한국에서 탄소 블록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중간 또는 상부 커버에 O-링 부착 후 흡집, 오염, 색상 차이 등 육안 검사
 - EFF-6011: 상부 커버에만 2개의 실링(sealing) 링 부착
 - EFF-6020: 중간 커버와 상부 커버에 각각 실링 링 부착
3. 접착제 도포 장비를 사용해 중간 커버, 탄소 블록, 하부 커버 접착 및 수직 압착
4. 회전 용접기를 사용해 상부 커버, 접착 처리된 탄소 블록, 섬프를 용접 및 결합
5. 오염, 접착제 넘침, 균열 등 자체 검사 수행
6. 기밀성 시험, 라벨 부착 및 최종 포장
7.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판정 결과

☞ 탄소 블록 생산에는 높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 이를 위한 맞춤형 장비가 필요하며, 해당 부품은 오염 물질을 흡착하여 최종 제품의 핵심 기능인 물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 구성 요소로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탄소 블록의 원산지인 한국임

-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주로 접착, 용접, 압착으로 이루어져 복잡하지 않고 개별 부품들에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핵심 구성 요소인 탄소 블록의 원산지인 한국임

III 시사점

- 단순 조립지가 아니라 제품에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의 생산지가 최종 제품의 원산지로 결정됨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575 (2023.10.27.), <https://rulings.cbp.gov/ruling/N335575>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집적 회로

요약

사례명	집적 회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561 (2025.09.10.)
사실관계	웨이퍼 제조 공정(Fabrication Process)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웨이퍼가 대만에서의 프런트엔드 공정, 필리핀에서의 백엔드 공정을 통해 집적 회로로 변형됨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만에서 수행된 프런트엔드 공정을 통해 IC 다이의 전기적 연결이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수행된 다수의 공정은 충분히 의미있고 복잡한 공정으로 판단되므로 대만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실질적인 변형을 겪은 것으로 판단됨<ul style="list-style-type: none">싱가포르에서의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집적 회로의 주요 특성이 상당 부분 부여되지만, 필수적 요소인 전기회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제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님반면, 필리핀에서의 백엔드 공정 이후에도 IC 다이는 대만에서의 프런트엔드 공정에서 이미 확립된 정체성과 사전 결정된 용도를 유지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⁷⁾

사례명 [집적 회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561 (2025.09.10.)

사실관계

요청자 Analog Devices, Inc.

제품명	AZ33A Device (Integrated Circuit, IC)
제품 용도	24비트 델타-시그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로서,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

제조공정



싱가포르에서 웨이퍼
제조 후 대만으로 수출



대만에서 WLP
프런트엔드 공정



필리핀에서 WLP
백엔드 공정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싱가포르에서 웨이퍼 제조 공정(Fabrication Process) 후 대만으로 운송

세부 공정	
① 실리콘 웨이퍼 (bare silicon wafer) 제조	⑦ 습식 식각 (Wet Etch)
② 에피택시 성장 (Epitaxial Growth)	⑧ 이온 주입 (Ion Implantation)
③ 산화 (Oxidation)	⑨ 확산 (Diffusion by Furnace)
④ 박막 증착 (Thin-Film Deposition)	⑩ 화학 세정 (Chemical Cleaning)
⑤ 리소그래피 (Lithography)	⑪ 금속 배선 공정 / 금속화 (Metal Wiring Process / Metallization)
⑥ 플라즈마 건식 식각 (Dry Etch by Plasma)	⑫ 검사 (Wafer Acceptance Test)

2. 대만에서 WLP 프런트엔드 공정 (WLP FRONT-END)

세부 공정	
① 폴리머 코팅 (Polymer coating)	⑥ 구리 금속 도금 (Copper metal plating)
② 열처리 / 경화 (Annealing, Curing)	⑦ 화학 세정 (Chemical cleaning)
③ 리소그래피 (Lithography)	⑧ 솔더볼 부착 (Solder ball mounting)
④ 습식 식각 (Wet etch)	⑨ 솔더볼 리플로우 (Solder ball reflows)
⑤ 구리 금속 증착 (Copper metal deposition)	⑩ 최종 외관검사 (Final Visual Inspection)

상세공정 3. 필리핀에서 WLP 백엔드 공정 (WLP BACK-END)

세부 공정	
① 웨이퍼 레벨 테스트 (Wafer level testing)	⑤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
② 트리밍 (Trim)	⑥ 웨이퍼 장착 및 절단 (Wafer mount and sawing)
③ 웨이퍼 후면 연마, 실리콘 박화 (Wafer backside grinding, silicon thinning)	⑦ 테이프 및 릴 포장 (Tape and reel)
④ 후면 라미네이션 (Backside lamination)	

4.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돼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판정 결과

- ▣ 대만에서 수행된 프런트엔드 공정을 통해 IC 다이의 전기적 연결이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수행된 다수의 공정은 충분히 의미있고 복잡한 공정으로 판단되므로 대만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실질적인 변형을 겪은 것으로 판단됨
 - 싱가포르에서의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집적 회로의 주요 특성이 상당 부분 부여되지만, 필수적 요소인 전기회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제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님
- ▣ 반면, 필리핀에서의 백엔드 공정 이후에도 IC 다이는 대만에서의 프런트엔드 공정에서 이미 확립된 정체성과 사전 결정된 용도를 유지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집적 회로의 원산지는 대만임

7)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② 시사점

- 제품의 본질인 전기회로 기능을 부여하는 프런트엔드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며 백엔드 공정은 기능을 향상시킬 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③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561 (2025.09.10.), <https://rulings.cbp.gov/ruling/N352561>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case
10

소형 드론 세트

요약

사례명	소형 드론 세트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538 (2025.10.03.)
사실관계	중국산 구동 모터, 진동 모터를 포함해서 베트남,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SMT 공정을 통해 제조된 PCBA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탑재하여 소형 드론 세트 완성
쟁점 및 판정	<p>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청인은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드론의 상승, 하강, 방향 전환 등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외국산 구성 요소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함하지만, CBP는 드론에 장착된 구동 모터가 드론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근거법령	-

I 판정사례⁸⁾

사례명 [소형 드론 세트]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538 (2025.10.03.)

사실관계

요청자 ALUX Co., Ltd. (대리인: Passwin Customs Service, Inc.)

제품명	• CoDrone EDU (JROTC edition)
구성	• 드론, 무선 컨트롤러,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제품 설명서 - 드론의 크기는 138.8mm x 138.5mm x 34.8mm이며, 무게는 54.8g
용도	• 교육 혹은 일반 소비자 레크리에이션용
완제품 HTSUS	• 9503.00.0090

제조공정



상세공정

1. 다음의 구성 요소를 한국으로 수입

세부 공정	수출국
구동 모터(드론용), 진동 모터(컨트롤러용)	중국
콘덴서, 인더터, 저항, 트랜지스터, 센서, 커넥터, 배터리, 충전기, 플라스틱 케이스 등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2. 한국 제조 공정

- 한국 내에서 PCB 조달
- 표면실장기술(SMT)을 사용하여 각종 전자부품을 PCB에 장착
- 완성된 PCBA를 추가 부품과 함께 드론 및 컨트롤러 케이스에 조립
- 구동 모터 및 진동 모터를 각각 드론 및 컨트롤러에 조립
- 비행, 방향 제어 및 코딩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탑재
- 소매용 박스에 포장

3. 미국 수출

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무역 구제 조치 및 추가 관세 적용 등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 신청인은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드론의 상승, 하강, 방향 전환 등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외국산 구성 요소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 하지만, CBP는 드론에 장착된 구동 모터가 드론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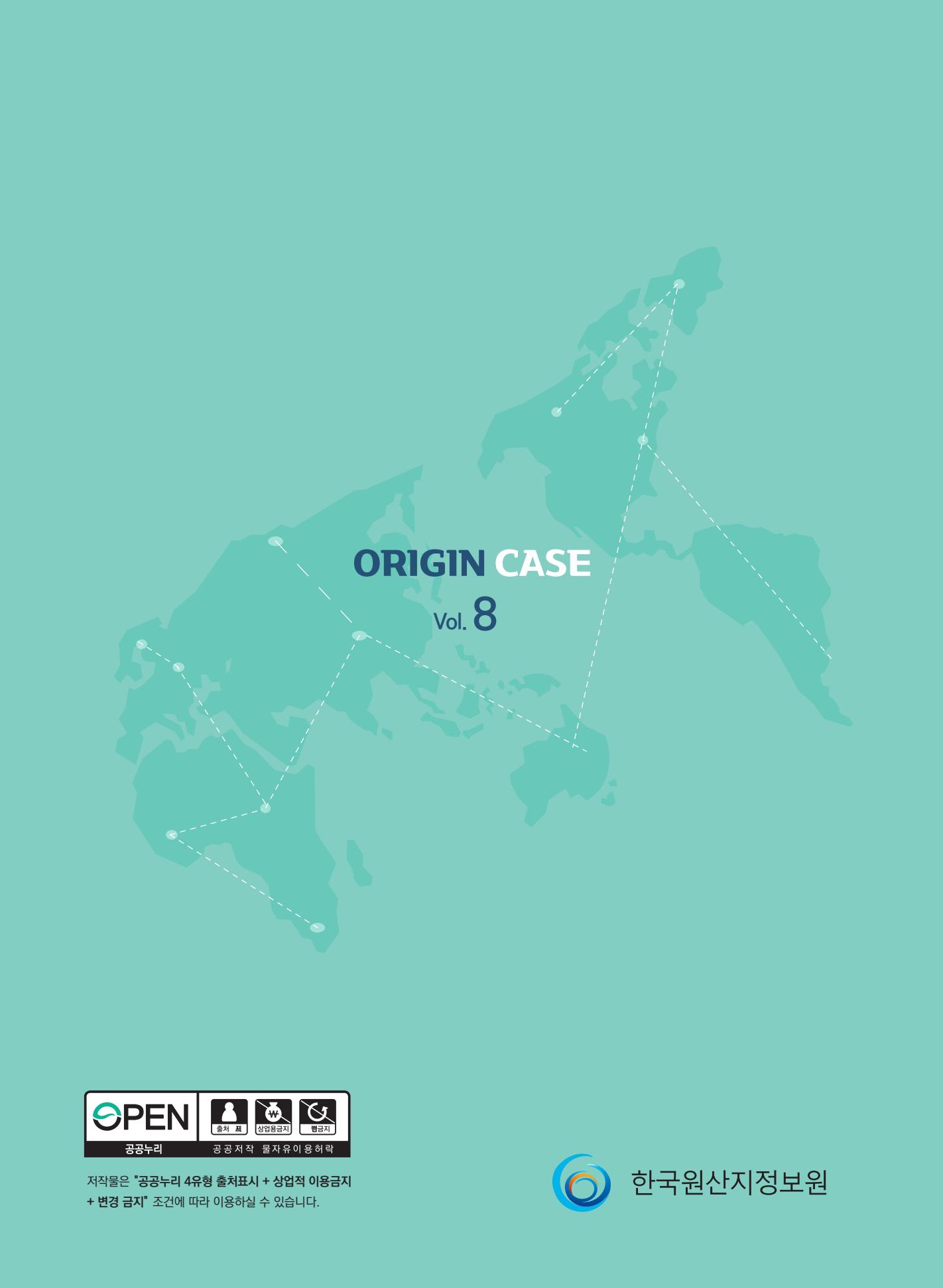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소형 드론 세트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비행 능력을 제공하는 구동 모터가 핵심 구성 요소로 판단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538 (2025.10.03.), <https://rulings.cbp.gov/ruling/N352538>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ORIGIN CASE

Vol. 8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